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927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 고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재호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1 증권계좌 잔고 현황 표 중 ‘차명주식수 및 예수금’란 기재 망 G 및 각 피고별 명의의 주식 및 예수금이 각 망 H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주식 및 예수금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별지2 표 기재 계좌의 2021. 10. 14.자 예금 20,348,125원은 망 H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예금으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22. 11. 21.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D, E, F은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21. 10. 14. 사망한 망인의 자녀 G(이하 ‘망 G’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들이다. 위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은 원고 A이 3/9, 원고 B, C이 각 2/9, 피고 D가 $6/63 (= 2/9 \times 3/7)$, 피고 E, F이 각 $4/63 (= 2/9 \times 2/7)$ 이다.

나. 관련 부동산

- 1) 망 G은 1995. 8. 30. 서울 금천구 I 대 113.6㎡(이하 ‘이 사건 I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49713호로 1995.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 6. 11. 서울 금천구 J 대 203.5㎡(이하 ‘이 사건 J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46398호로 2001.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 2) 망 G은 2002. 1. 14. 이 사건 I 대지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J 대지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2) 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 및 각 증권계좌

1) 한편 2001. 6. 21. 망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임대관리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료 수입 등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망 G 사망 당시인 2021. 10. 14.경 위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액은 20,348,125원이었다.

피고 D는 2021. 11. 16. 위 계좌의 명의인을 망 G에서 피고 D로 변경하였다.

2) 2010. 3. 29.경 망 G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09. 9. 2.경 피고 D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2014. 4. 15.경 피고 E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10. 10. 15.경 피고 F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가 각 개설되었는 바(이하 ‘이 사건 각 증권계좌’라 한다), 망 G 사망 당시인 2021. 10. 14.경 위 각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 잔고는 별지1 증권계좌 잔고 현황 표 중 ‘차명주식수 및 예수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2021. 11. 15. 망 G 명의의 위 L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 및 예수금을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L증권 계좌로 이전하였다.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원고들은 2023. 5. 4.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358호) 현재 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익을 모두 망인이 사용·수익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G에게 부담부 증여하였고, 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 및 망인이 위 임대수익으로 주식투자 등을 하기 위하여 개설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는 모두 망인이 그 명의를 차용하거나 명의신탁 받은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임대관리 계좌 및 각 증권계좌 잔고에 관하여는 망인이 망 G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예금채권 및 주식 등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망 G의 사망으로 피고들은 망 G은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계좌의 잔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지 및 각 건물은 망 G의 자금으로 취득한 망 G의 소유물이고, 망인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과정에서 망 G이 망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서 위 차용금을 상회하는 약 19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 역시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나 각 증권계좌의 잔고는 망 G이나 피고들의 소유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05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의 기초사실과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 및 이 사건 각 증권계좌의 망인의 사망 당시 잔고인 주식 등을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원고들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망 G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망인이 망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증여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사망 전까지 이를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추정을 반복하여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나아가 이를 망 G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망인과 망 G 사이에 그 주장의 증여계약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이루어졌을 뿐 등기부상으로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 원고들은, 망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망인이 CDMA기지국 장비 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던 반면 망 G은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결국 망인이 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거나 망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공사비용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로 그 신축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망 G 명의의 건축허가서가 존재하고, 건축허가 무렵인 2001. 6. 21. 망 G 명의의 K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후 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위 대출금이 건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다투지

않는 점,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이나 건축비용을 망인이 상당 부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명의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망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없고, 당시는 이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이어서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또한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 취득 사실이나 이에 따른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사실이나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계약 체결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부담으로 망인이 망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익을 망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만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실상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을 망인이 사용한 사정을 들어 위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과 망 G 사이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나 건축에 상당한 자금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망 G로서는 아버지인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그 보증금이나 임대수익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그 임의 처분을 묵인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임대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망 G이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증여하였다거나 그 처분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실제로 망인이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대출원리금 상환금,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장대리 등 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들은 또한, 망인이 망 G이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 및 각 증권계좌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명의신탁을 받았고, 이로써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등도 망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 1997. 12. 31.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이 개설하는 계좌에 관하여는 명의차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 명의신탁이란 자산에 관한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위 각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 관한 명의차용이나 명의신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위 각 계좌에 관한 명의차용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은 망인이 위 각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사용한 사정을 들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이 망인의 소유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망인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 관한 관리 또한 위임하였을 수 있는 점, 망 G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권계좌의 관리를 망인에게 맡긴 것은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을 망 G이나 피고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이 망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자녀인 망 G이나 망 G의 가족인 피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초경부터 원고 A, 원고 B와 그 전처 O, 자녀들인 P, Q, 원고 C와 그 처인 R, 자녀들인 S, T(이하 ‘원고 A 외 12인’이라 한다) 명의의 각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온 사실, 위 계좌들과 이 사건 임대관리계좌 사이에서도 상당한 자금의 이전이 수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 A 외 12인 명의의 위 각 증권계좌와 망 G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A 외 12인에게 임의로 증여하거나 망 G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 등을 반환할 의도로 위 각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망 G이나 피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만을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일, 판사 임효빈, 판사 정 예

별지

1)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다.

2)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15와 같다.